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54호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45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46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 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8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17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7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1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7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1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2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7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2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7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2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79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45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등 업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업무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기관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표자 도상익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도곡동 411-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의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계획·조사·설계 포함”에 한함.)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의 업무에 한한다.	(기관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표자 이재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2. 행정사항

-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인천광역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업 신규 등록의 경우 2개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 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 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27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46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부터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m^3) 단위단가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5.

인천광역시장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370,000원/ m^3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정방법
- 적용시기 : 2019. 7. 1일부터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2019. 7.

인천광역시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1 총괄유출계수(C) 산정

○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유출계수의 평균값을 기초유출계수로 적용하여 총괄유출계수 산정

※ [붙임1] 적용 유출계수

○ 총괄유출계수 산정 식 : $C = \sum_{i=1}^m C_i \cdot A_i / \sum_{i=1}^m A_i$

- C : 총괄유출계수
- C_i : i번째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
- A_i : i번째 토지이용도별 총면적
- m : 토지이용도의 수

○ 도시개발사업(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외)에 따른 총괄유출계수 산정 시 기초유출계수 항목에 없는 토지이용의 유출계수는 도시계획시설별 가장 유사한 값으로 적용

※ [붙임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 값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가장 유사한 값으로 적용

※ [붙임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 값

2 강우강도(I) 적용

○ 유달시간(t) = 유입시간(t_1) + 유하시간(t_2)

- 개발지역의 최종방류구 까지를 유달시간으로 산정
- 유입시간 : 하수도시설기준에서 규정하는 평균값(7분) 적용
- 유하시간 : $t_2 = \frac{L}{V} \times \frac{1}{60}$

· L : 개발지역내 최장 관거연장(m)

· V : 관내 평균유속(1.8m/sec)

-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계획설계빈도에 따른 강우강도식 적용

구 분	확률빈도	강우강도식(mm/hr)	적용기준	비고
지 선 하수관거	10년빈도	$I_{10} = \frac{331.44}{t^{0.3867}}$	$C \cdot A < 12\text{ha}$	
간 선 하수관거	30년빈도	$I_{30} = \frac{419.35}{t^{0.3976}}$	$C \cdot A \geq 12\text{ha}$	
주 간 선 하수관거	30년빈도	$I_{30} = \frac{419.35}{t^{0.3976}}$	$C \cdot A \geq 150\text{ha}$	

3 빗물유출량(Q) 산정

- 합리식에 의한 유량 산정 : $Q = \frac{1}{360} C \cdot I \cdot A$
- Q : 빗물유출량(m³/sec)
 - C : 유출계수
 - I : 유달시간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 A : 배수면적(ha)
- 개발사업 전 총괄유출계수(C₁)와 개발사업 후 총괄유출계수(C₂)를 각각 계산하여 증가되는 빗물유출량 산정
- 빗물유출 증가량 : $Q = \frac{1}{360} C_2 \cdot I \cdot A - \frac{1}{360} C_1 \cdot I \cdot A$

4 하수관경(D) 결정

- 관거 단면적의 수심 결정시 원형단면은 만류, 사각형(박스) 단면은 높이의 90%를 적용
- 통수유량 산정시 유속은 하수도시설기준상 이상적 유속의 최대값인 1.8m/s를 적용
- ※ [붙임4] 관경별 통수유량
- 하수관경 결정은 증가되는 빗물유출량을 통수할 수 있는 관경 이상으로 하되, 관경이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정

5 관거연장(L) 측정

- 개발사업 지구에서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하여 최종 방류구인 하천 또는 해안까지의 하수관거 연장을 측정하되 m단위 기준으로 일단위 절사

6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는 2013. 10. 14. 최초 고시된 공사비 기준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변경공사비 적용
 - ※ [붙임5]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경이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된 관경이 각 표준단위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해 해당 관경에 대한 공사비 산정

7 빗물부담금 산정

- 개발사업 전후의 빗물유출량을 산정한 후 증가량 계산
- 증가된 유출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하수관경 결정 후 관거 연장 측정
- 빗물부담금 =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거 연장
(10원 미만 금액 절사)

【붙임1】 적용 유출계수

토 지 이 용		유출계수		토 지 이 용		유출계수	
		범위	적용값			범위	적용값
상업 지역	도심지역	0.70~0.95	0.83	운 동 장		0.20~0.35	0.28
	근린지역	0.50~0.70	0.60	공원, 묘역, 잔디		0.10~0.25	0.18
주거 지역	단독주택	0.30~0.50	0.40	도로	아스팔트	0.70~0.95	0.83
	독립주택단지	0.40~0.60	0.50		콘크리트	0.80~0.95	0.88
	연립주택단지	0.60~0.75	0.68		벽 돌	0.70~0.85	0.78
	교외지역	0.25~0.40	0.33	수 면		1.00	1.00
	아 파 트	0.50~0.70	0.70 ¹⁾	경 작 지		0.10~0.25	0.18
산업 지역	산재지역	0.50~0.80	0.65	미개발지역(공지)		0.10~0.30	0.20
	밀집지역	0.60~0.90	0.75	나 지		0.30~0.40	0.35
상습침수지역		-	0.80	산지	급경사	0.40~0.60	0.50
철 로		0.20~0.40	0.30		완경사	0.20~0.40	0.30

※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유출계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빗물부담금 산정에 한해 범위가 아닌 기준이 되는 특정값이 필요하므로 평균값을 적용값으로 한다. (단, 아파트는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 적용)

주1) 하수도시설기준에서 아파트의 유출계수를 0.50~0.70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불투수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평균값(0.60)을 적용할 경우 연립주택단지의 평균값(0.68)보다 작아 불합리하므로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0.70)으로 적용함. 단 공동주택 유출계수 적용 시 단지 내 근생 및 녹지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부 구분하여 [붙임3]에 따른 각 유출계수를 적용한다.

【붙임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분류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적용값	비고
교통시설	도로	0.83	도로(아스팔트)
	철도	0.3	철로
	항만	0.83	도로(아스팔트)
	공항	0.83	도로(아스팔트)
	주차장	0.83	도로(아스팔트)
	자동차정류장	0.83	도로(아스팔트)
	궤도	0.3	철로
	운하	1.00	수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0.83	도로(아스팔트)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0.83	도로(아스팔트)
공간시설	광장	0.83	도로(아스팔트)
	공원	0.18	공원
	녹지	0.3	산지(완경사)
	유원지	0.18	공원
	공공공지	0.35	나지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0.65	산재지역
	수도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전기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가스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열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방송·통신시설	0.65	산재지역
	공동구	0.65	산재지역
	시장	0.60	근린지역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0.65	산재지역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0.35	운동장(최대값)
	운동장	0.28	운동장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적용값	비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0.60	근린지역
	문화시설	0.60	근린지역
	체육시설	0.60	근린지역
	도서관	0.60	근린지역
	연구시설	0.60	근린지역
	사회복지시설	0.60	근린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	0.60	근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0.60	근린지역
방재시설	하천	1.00	수면
	유수지	1.00	수면
	저수지	1.00	수면
	방화설비	0.65	산재지역
	방풍설비	0.30	산지(완경사)
	방수설비	0.65	산재지역
	사방설비	0.50	산지(급경사)
	방조설비	0.20	미개발지역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0.18	묘역
	공동묘지	0.18	묘역
	납골시설	0.18	묘역
	자연장지	0.18	묘역
	장례식장	0.65	산재지역
	도축장	0.65	산재지역
	종합의료시설	0.60	근린지역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0.65	산재지역
	폐기물처리시설	0.65	산재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0.65	산재지역
	폐차장	0.65	산재지역

[붙임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분류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0.40	단독주택
	다중주택	0.50	독립주택단지
	다가구주택	0.50	독립주택단지
	공관	0.40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0.70	아파트
	연립주택	0.68	연립주택단지
	다세대주택	0.68	연립주택단지
	기숙사	0.68	연립주택단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0.60	근린지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0.60	근린지역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0.60	근린지역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0.60	근린지역
	탁구장 및 체육도장	0.60	근린지역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0.60	근린지역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0.60	근린지역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0.60	근린지역
	지역아동센터	0.60	근린지역
	가스배관시설	0.60	근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0.60	근린지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0.60	근린지역
	서점	0.60	근린지역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0.60	근린지역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0.60	근린지역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	0.60	근린지역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0.60	근린지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0.60	근린지역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0.60	근린지역
	단란주점	0.60	근린지역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0.60	근린지역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0.60	근린지역
	고시원	0.60	근린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0.60	근린지역
	집회장	0.60	근린지역
	관람장	0.60	근린지역
	전시장	0.60	근린지역
	동·식물원	0.60	근린지역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0.60	근린지역
	봉안당	0.60	근린지역
판매시설	도매시장	0.60	근린지역
	소매시장	0.60	근린지역
	상점	0.60	근린지역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0.83	도로(아스팔트)
	철도시설	0.30	철로
	공항시설	0.83	도로(아스팔트)
	항만시설	0.83	도로(아스팔트)
의료시설	병원	0.60	근린지역
	격리병원	0.33	교외지역
교육연구시설	학교	0.35	운동장(최대값)
	교육원	0.60	근린지역
	직업훈련소	0.60	근린지역
	학원	0.60	근린지역
	연구소	0.60	근린지역
	도서관	0.60	근린지역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0.60	근린지역
	노인복지시설	0.60	근린지역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0.60	근린지역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0.33	교외지역
	자연권 수련시설	0.33	교외지역
	유스호스텔	0.33	교외지역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0.60	근린지역
	체육관	0.60	근린지역
	운동장	0.28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0.60	근린지역
	일반업무시설	0.60	근린지역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0.60	근린지역
	관광숙박시설	0.33	교외지역
	고시원	0.60	근린지역
	그 밖	0.60	근린지역
위락시설	단란주점	0.60	근린지역
	유홍주점	0.60	근린지역
	유원시설업의 시설	0.60	근린지역
	무도장, 무도학원	0.60	근린지역
	카지노영업소	0.60	근린지역
공장	공장	0.75	밀집지역
창고시설	창고	0.65	산재지역
	하역장	0.65	산재지역
	물류터미널	0.65	산재지역
	집배송 시설	0.65	산재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0.83	도로(아스팔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0.83	도로(아스팔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0.65	산재지역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0.65	산재지역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0.65	산재지역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0.65	산재지역
	도료류 판매소	0.65	산재지역
	도시가스 제조시설	0.65	산재지역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화약류 저장소	0.65	산재지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0.83	도로(아스팔트)
	세차장	0.83	도로(아스팔트)
	폐차장	0.83	도로(아스팔트)
	검사장	0.83	도로(아스팔트)
	매매장	0.83	도로(아스팔트)
	정비공장	0.83	도로(아스팔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0.83	도로(아스팔트)
	차고 및 주기장	0.83	도로(아스팔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0.33	교외지역
	가축시설	0.33	교외지역
	도축장	0.33	교외지역
	도계장	0.33	교외지역
	작물 재배사	0.33	교외지역
	종묘배양시설	0.33	교외지역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0.33	교외지역
	식물과 관련된 시설	0.33	교외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0.65	산재지역
	고물상	0.65	산재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0.65	산재지역
교정 및 군사 시설	교정시설	0.33	교외지역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등	0.33	교외지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0.33	교외지역
	국방·군사시설	0.33	교외지역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0.65	산재지역
	전신전화국	0.65	산재지역
	촬영소	0.65	산재지역
	통신용 시설	0.65	산재지역
	그 밖	0.65	산재지역
발전시설	발전시설	0.65	산재지역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0.18	묘역
	봉안당	0.18	묘역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18	묘역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0.33	교외지역
	야외극장	0.33	교외지역
	어린이회관	0.60	근린지역
	관망탑	0.60	근린지역
	휴게소	0.83	도로(아스팔트)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18	공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0.65	산재지역

【붙임4】 관경별 통수유량

1) 원형단면

관경(mm)	단면적(m ²)	유속(m/s)	유량(m ³ /s)
250	0.049	1.8	0.088
300	0.071	1.8	0.127
350	0.096	1.8	0.173
400	0.126	1.8	0.226
450	0.159	1.8	0.286
500	0.196	1.8	0.353
600	0.283	1.8	0.509
700	0.385	1.8	0.693
800	0.503	1.8	0.905
900	0.636	1.8	1.145
1000	0.785	1.8	1.414
1100	0.950	1.8	1.711
1200	1.131	1.8	2.036
1350	1.431	1.8	2.576

2) 직사각형 단면(유효통수능 90% 적용)

H(m)	W(m)	단면적(m ²)	유효단면적(m ²)	유속(m/s)	유량(m ³ /s)
1.5	1.5	2.25	2.03	1.8	3.645
1.5	1.8	2.70	2.43	1.8	4.374
1.8	1.8	3.24	2.92	1.8	5.249
1.5	2.0	3.00	2.70	1.8	4.860
2.0	2.0	4.00	3.60	1.8	6.480
1.5	2.5	3.75	3.38	1.8	6.075
2.0	2.5	5.00	4.50	1.8	8.100
2.5	2.5	6.25	5.63	1.8	10.125
1.5	3.0	4.50	4.05	1.8	7.290
2.0	3.0	6.00	5.40	1.8	9.720
2.5	3.0	7.50	6.75	1.8	12.150
3.0	3.0	9.00	8.10	1.8	14.580

【붙임5】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금회 변경)

1) 원형단면(관중 흡관, 토피 2.0m 기준)

관경(mm)	토사구간(원/m)	포장구간(원/m)
250	292,610	454,000
300	330,060	497,470
350	360,200	533,640
400	381,090	560,550
450	408,570	594,060
500	445,900	637,420
600	536,660	740,230
700	657,300	872,910
800	786,460	1,014,140
900	885,220	1,124,950
1000	1,061,730	1,313,560
1100	1,167,690	1,431,510
1200	1,384,280	1,660,160
1350	1,700,290	1,994,250

2) 직사각형 단면(1련, 토피 0.7m 적용)

구 분	토사구간(원/m)	포장구간(원/m)
H1.5×W1.5	2,735,910	2,852,110
H1.5×W1.8	3,043,190	3,159,390
H1.8×W1.8	3,586,550	3,702,750
H1.5×W2.0	3,567,820	3,684,010
H2.0×W2.0	4,032,490	4,148,690
H1.5×W2.5	4,572,100	4,688,290
H2.0×W2.5	5,156,690	5,272,880
H2.5×W2.5	5,508,930	5,625,130
H1.5×W3.0	5,433,990	5,550,180
H2.0×W3.0	6,138,480	6,254,680
H2.5×W3.0	6,651,870	6,768,060
H3.0×W3.0	7,041,590	7,157,79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2호(18.12.21.)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3호(18.12.2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I.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지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m²

○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공급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 도시가스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면적 **【해당사항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2003년 8월	2019년 6월	
변경	2003년 8월	2020년 6월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7. 재원조달방법 **【변경 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합계		2,713,186.2	100.0	2,713,186.2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60,191.7	5.9	160,191.7	5.9		
	공동주택	280,531.8	10.3	280,380.0	10.3	감) 151.8	
	근린생활시설	12,411.5	0.5	12,411.5	0.5		
	준주거	89,452.1	3.3	89,452.1	3.3		
	소계	542,587.1	20.0	542,435.3	20.0	감) 151.8	
상업 시설 용지	상업시설	226,399.8	8.3	226,399.8	8.3		
	업무시설	54,347.7	2.0	54,347.7	2.0		
	주상복합	54,102.9	2.0	54,102.9	2.0		
	소계	334,850.4	12.3	334,850.4	12.4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0.9	23,982.8	0.9		
	숙박시설	129,159.1	4.8	129,159.1	4.8		
	위락시설	103,966.2	3.8	103,966.2	3.8		
	소계	257,108.1	9.5	257,108.1	9.5		
유보지		133,138.8	4.9	133,138.8	4.9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31,666.5	52.8	1,431,818.3	52.8	증) 151.8	
	학교	24,237.3	0.9	24,237.3	0.9		
	교육시설	96,093.3	3.5	96,093.3	3.5		
	유치원	3,432.9	0.1	3,432.9	0.1		
	광장	26,661.3	1.0	26,661.3	1.0		
	근린공원	422,348.4	15.6	422,348.4	15.6		
	소공원	10,704.4	0.4	10,704.4	0.4		
	어린이공원	3,541.0	0.1	3,541.0	0.1		
	완충녹지	105,683.7	3.9	105,835.5	3.9	증) 151.8	
	경관녹지	222,268.1	8.2	222,268.1	8.2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0.5	12,252.3	0.5		
	병원	39,712.8	1.5	39,712.8	1.5		
	복지	672.3	0.0	672.3	0.0		
	발전시설	19,001.8	0.7	19,001.8	0.7		
	공공청사	3,987.4	0.1	3,987.4	0.1		
	주차장	21,427.1	0.8	21,427.1	0.8		
	도로	415,819.8	15.3	415,819.8	15.3		
	공공공지	437.5	0.0	437.5	0.0		
	배수지	3,385.1	0.1	3,385.1	0.1		
	종교시설용지	2,032.3	0.1	2,032.3	0.1		
주유소	5,489.2	0.2	5,489.2	0.2			
창고시설	2,504.0	0.1	2,504.0	0.1		여촌지원시설	
군사시설	3,809.8	0.1	3,809.8	0.1			
소계	1,445,501.8	53.3	1,445,653.6	53.3	증) 151.8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용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합계	기정	-	7개소	280,531.8	감) 151.8m ²	
	변경	-	7개소	280,380.0		
1단계	계	기정	-	2개소	89,510.2	감) 151.8m ²
		변경	-	2개소	89,358.4	
	공동주택	기정	1	운북동 1278-1번지	44,738.9	감) 52.9m ²
		변경	1	운북동 1278-1번지	44,686.0	
		기정	2	운북동 1278-2번지	44,771.3	
		변경	2	운북동 1278-2번지	44,672.4	
2단계	계	기정	-	5개소	191,021.6	
	공동주택	기정	4	운북동 1351-15번지	28,190.9	
		기정	5	운북동 1351-16번지	30,987.0	
		기정	7	운북동 1367-1번지	24,882.3	
		기정	8	운북동 1366-8번지	82,060.4	
	기정	9	운북동 1366-1번지	24,901.0		

○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계	도로	○가로망 전체 67개노선(도로율 15.8%) ○대로 3개노선 ○중로 24개노선 ○소로 40개노선	○가로망 전체 67개노선(도로율 15.8%) ○대로 3개노선 ○중로 24개노선 ○소로 40개노선	변경 없음
	주차장	○주차장 6개소(21,427.1m ²)	○주차장 6개소(21,427.1m ²)	변경 없음
학교계획		○학교 2개소(24,237.3m ²) - 초등학교 1, 중·고등학교 1 ○유치원 3개소(3,432.9m ²)	○학교 2개소(24,237.3m ²) - 초등학교 1, 중·고등학교 1 ○유치원 3개소(3,432.9m ²)	변경 없음
공공시설 계획		○공공공지: 1개소(437.5m ²) ○발전시설: 1개소(19,001.8m ²) ○환경기초시설: 3개소(363.6m ²) ○배수시설: 1개소(3,385.1m ²) ○공공청사: 1개소(3,987.4m ²) ○보건의료시설: 1개소(39,712.8m ²) ○복지시설: 2개소(672.3m ²) ○교육연구시설: 3개소(96,093.3m ²) ○광장: 1개소(26,661.3m ²) ○군사시설: 1개소(3,809.8m ²)	○공공공지: 1개소(437.5m ²) ○발전시설: 1개소(19,001.8m ²) ○환경기초시설: 3개소(363.6m ²) ○배수시설: 1개소(3,385.1m ²) ○공공청사: 1개소(3,987.4m ²) ○보건의료시설: 1개소(39,712.8m ²) ○복지시설: 2개소(672.3m ²) ○교육연구시설: 3개소(96,093.3m ²) ○광장: 1개소(26,661.3m ²) ○군사시설: 1개소(3,809.8m ²)	변경 없음
공원녹지 계획		○근린공원 13개(422,348.4m ²) ○소공원 2개(10,704.4m ²) ○어린이공원 2개(3,541.0m ²) ○완충녹지 31개(105,683.7m ²) ○경관녹지 9개(222,268.1m ²)	○근린공원 13개(422,348.4m ²) ○소공원 2개(10,704.4m ²) ○어린이공원 2개(3,541.0m ²) ○완충녹지 31개(105,835.5m ²) ○경관녹지 9개(222,268.1m ²)	완충녹지 10 증) 151.8m ²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인구수용 계획	○ 인구수용계획(변경)								
	구분	면적(m ²)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494,826.4	5,386	13,734	2.55인/호				
	변경	494,674.6	5,386	13,734	2.55인/호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택건설계획 : 단독 462호, 공동 3,545호, 주상복합 1,379호								
	○ 총괄(변경)								
	구분		면적(m ²)	세대수(호)	인구수(인)	인구밀도(인/ha)	비고		
	합계		기정	494,826.4	5,386	13,734	278		
			변경	494,674.6	5,386	13,734	278	감) 151.8m ²	
	1단계	소계	기정	260,187.8	3,029	7,723	297		
			변경	260,036.0	3,029	7,723	297	감) 151.8m ²	
		단독주택	기정	116,574.7	290	739	63		
			일반형	기정	28,748.8	86	219	76	
			블록형	기정	87,825.9	204	520	59	
		공동주택	기정	89,510.2	1,360	3,469	388		
			변경	89,358.4	1,360	3,469	388	감) 151.8m ²	
	주상복합	기정	54,102.9	1,379	3,515	650			
	2단계	소계	기정	234,638.6	2,357	6,011	256		
		단독주택	기정	43,617.0	172	439	101		
			일반형	기정	43,617.0	172	439	101	
			공동주택	기정	191,021.6	2,185	5,572	292	
	○ 단독주택(변경 없음)								
	구분		면적(m ²)	용적률(%)	평균면적(m ²)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기정	160,191.7	-	-	462	1,178	
	1단계	소계	기정	116,574.7	-	-	290	739	
이주단지1		단독1	기정	28,748.8	150	334	86	219	
		단독2	기정	43,117.9	100	431	100	255	
		단독3	기정	8,945.8	100	447	20	51	
		소계	기정	43,617.0	-	-	172	439	
2단계	이주단지2	기정	22,118.8	150	340	65	166		
	단독4	기정	21,498.2	100	201	107	273		

구분	주요내용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공동주택(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비고	
	합계	기정	280,531.8				3,545	9,041		
		변경	280,380.0				3,545	9,041	감) 151.8㎡	
	1단계	소계	기정	89,510.2				1,360	3,469	
			변경	89,358.4				1,360	3,469	감) 151.8㎡
		공동1	기정	44,738.9	190	60㎡초과	127	668	1,704	
			변경	44,686.0	190	60㎡초과	127	668	1,704	감) 52.9㎡
		공동2	기정	44,771.3	195	60㎡초과	126	692	1,765	
			변경	44,672.4	195	60㎡초과	126	692	1,765	감) 98.9㎡
	2단계	소계	기정	191,021.6				2,185	5,572	
		공동4	기정	28,190.9	150	85㎡초과	124	341	870	
		공동5	기정	30,987.0	150	85㎡초과	225	207	528	
		공동7	기정	24,882.3	150	60~85㎡	112	338	862	
		공동8	기정	82,060.4	150	60~85㎡	112	1,096	2,795	
		공동9	기정	24,901.0	150	85㎡초과	186	203	517	
	○ 주상복합(변경 없음)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비고	
	합계	기정	54,102.9				1,379	3,515		
		1단계	주상1	기정	17,471.1	400	85㎡초과	200	279	710
85㎡초과	163									
주상2	기정		36,631.8	400	60~85㎡	115	1,100	2,805		
					60㎡이하	85				

10.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11. 산업유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13. 환경보전계획 【변경】

- 지형·지질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는 완만한 평탄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않으나, 절·성토공사를 시행하게 됨 ○ 토공발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토량 6,944,557m³, 성토량 6,944,557m³ 발생 ○ 비옥토 발생 : 122,981m³ ○ 연약지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릉지역 경계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축조된 해안제방을 경계로 분포, 해안제방보다는 구릉지에 가까운 내부지역이 연약층후가 깊은 양상을 보임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고에 따른 표준사면구배 적용 ○ 비옥토 발생시 가적치장에 적치한 후 사업지구내 계획된 조성형 공원 및 완충·경관녹지의 식재토량으로 활용 ○ 연약지반의 심도가 얕은(3.0m이내) 구간은 선재하(Pre-Loading) 공법 적용, 연약지반의 심도가 깊은 구간에 대하여는 Plastic Board Drain 공법적용

- 동·식물상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밤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등 63,400주의 훼손수목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 : DGN 0,2,3등급 지역이 감소하고 DGN 1, 6등급 지역의 증가가 예상됨 ○ 육상동물상 : 농경지와 산림의 편입으로 서식환경의 축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체수의 감소가 예상됨 ○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내 수계는 현재 성토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준치가 힘들것으로 예상 ○ 해양동식물 :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수목중 수형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일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중 DBH 15cm이하의 692주를 이식할 계획임 ○ 동물상 보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작업 금지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 육수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 내의 수계가 성토로 준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감대책은 어려울 것임 ○ 해양동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발생원의 차단과 주기적인 환경조사를 통하여 토사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임

- 토지이용

환경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전체면적 : 2,713,186.2m² - 농경지 1,522,340.3m²(56.1%), 임야 779,370m²(28.7%), 대지 85,721m²(3.2%), 도로 70,330m²(2.6%), 기타 255,424.9m²(9.4%)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 - 총용지면적 : 2,713,186.2m² - 주택건설용지 : 542,587.1m² → 542,435.3m² - 상업·업무시설용지 : 334,850.4m² - 관광시설용지 : 257,108.1m² - 유보지 : 133,138.8m² - 공공시설용지 : 1,445,501.8m² → 1,445,653.6m² ○ 건물 281동(20,360m²), 비닐하우스 61동(3,708m²) 의 지장물이 발생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시행으로 점유 또는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대상인 지장물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 ○ 친환경적 재료(투수성포장) 사용 검토

- 대기질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현황+가중농도) - PM-10 : 1시간 298.4~469.1$\mu\text{g}/\text{m}^3$, 24시간 87.7~98.4$\mu\text{g}/\text{m}^3$, 연평균 44.3~49.2$\mu\text{g}/\text{m}^3$ - NO₂ : 1시간 70.9~85.5ppb, 24시간 22.0~25.7ppb, 연평균 14.0~17.1ppb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운영시(연료사용+차량) - 대기 환경기준 만족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살수차 운영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2개소 설치 - 공사용 차량 덮개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4개소)

– 수질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토공사로 인한 SS 유출농도는 약 154.22~157.02mg/ℓ 로 무처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6.56m³/일 - 지하관정 및 시추공에 대한 폐공조치 필요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최대급수량 : 8,535m³/일 - 일최대오수량 : 6,956m³/일 - 계획일최대오수량 : 7,651m³/일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非)우기에 공사실시 - 측구,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설치 : 8개소 - 현장사무소 부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 폐공처리대책수립시행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 계통의 영종송수관로(Ø1,350mm)에서 분기된 배후지원단지 기존 송수관로(Ø700mm)를 이용, 계획지구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여 운북배수지(신설)를 통한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 우수처리계획 : 직접해안방류 3개소, 기존수로를 통한 방류 2개소 - 오수처리계획 : 오수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5개소)

– 토양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철거시 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 - 공사시 화약사용으로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공사시 건설장비 운용으로 인한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토양에 영향 예상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유류는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는 외부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관시설 설치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실시

- 폐기물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 123,258톤 - 생활폐기물 : 100.5kg/일 - 분뇨발생량 : 84.0 ℓ/일 - 폐유발생량 : 175.3 ℓ/일 - 임목폐기물 : 8,071톤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 56,659kg/일 <li style="padding-left: 40px;">가연성 : 26,615kg/일 <li style="padding-left: 40px;">불연성 : 11,688kg/일 <li style="padding-left: 40px;">재활용품 : 18,356kg/일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 위탁처리 및 재활용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후 위탁처리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 소음·진동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공사시(토공) 기준 소음도는 65.4~72.9dB(A)로 총 2개소에서 환경목표 기준 70dB(A) 초과 및 근접 - 진동도는 56.5~62.8dB(A)로 환경목표기준 65dB(A) 만족 - 일반발파시 : 진동기준 0.03~0.26cm/sec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0.2cm/sec) 초과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변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초과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가설방음판넬 4개소(기존 도로변 및 마을에서 공사장 차폐용 3개소 포함) 설치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 조성,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벽(벽) 설치, 직각배치, 저소음포장(에코팔트) 등 가로별 및 사업계획 특성에 맞는 대안을 선정하여 저감방안 수립시행

- 위락·경관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후 지구내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 구릉지성 임야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된 농촌경관을 보이거나 사업시행후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시형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 지형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라인 조성 ○ 남측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 상업지역 등에 야간조명 및 1층벽면의 투시성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야간상업지역의 분위기 활성화 유도

- 인구·주거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기타 등의 지장물 발생 및 농경지 및 임야 편입 ○ 계획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4,558인(상주인구 13,734인, 전세인구 2,165인, 숙박인구 8,659인)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등 불가피한 악영향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 사업지구 내 상주인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14.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15.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요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 없음】**
-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공급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 도시가스
 - 공급용량(변경 없음)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공용용량	전기	22.1MW	전력사용량 : 748,798 Mwh년
	열	227.0Gcal/h	연료사용량 : 57,856 toe/년

- 교통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참조
- 정보·통신계획 **【변경 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 문화시설 【변경 없음】

○ 공원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 면적)	
		번호	위치	면적(m ²)		
합계		기정	-	17개소	436,593.8	
계		기정	-	2개소	10,704.4	
1단계	소공원	기정	1	운북동 1278-4번지	8,119.9	
		기정	2	운북동 1296번지	2,584.5	
계		기정		13개소	422,348.4	
1단계	소계	기정	-	-	270,612.6	오기정정
		변경	-	-	260,215.7	
	근린공원	기정	1	운북동 1279번지	39,203.5	
		기정	2	운북동 1280-3번지	62,420.6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34,508.3)
		기정	4	운북동 1273번지	15,940.4	
		기정	5	운북동 1274-1번지	10,677.6	
		기정	6	운북동 1275-1번지	10,000.6	
		기정	7	운북동 1285-5번지 운북동 1285-2번지	22,288.6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65,176.1)
2단계	소계	기정	-	-	151,147.2	
	근린공원	기정	9	운북동 1351-13번지	40,277.9	
		기정	10	운북동 1352-7번지	13,795.9	
		기정	11	운북동 1353-11번지	46,718.8	
		기정	12	운북동 1366-7번지	37,580.1	
기정	13	운북동 1353-2번지	12,774.5			
3단계	소계	기정	-	-	110,669.9	오기정정
		변경	-	-	10,985.5	
	근린공원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10,396.9)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588.6)
계		기정	-	2개소	3,541.0	
1단계	어린이 공원	기정	1	운북동 1297-3번지	1,518.6	
2단계		기정	2	운북동 1353-14번지	2,022.4	

○ 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 면적)	
		번호	위치	면적(m ²)		
총계	기정	-	40개소	327,951.8		
	변경	-	40개소	328,103.6	증) 151.8m ²	
계	기정	-	31개소	105,683.7		
	변경	-	31개소	105,835.5	증) 151.8m ²	
소계	기정	-	-	52,171.3		
	변경	-	-	52,323.1	증) 151.8m ²	
1 단계	완충녹지	기정	1	운북동 1280-9번지	3,515.6	
		기정	2	운북동 1280-10번지	1,400.1	
		기정	3	운북동 1280-11번지	1,618.9	
		기정	4	운북동 1280-12번지	573.4	
		기정	5	운북동 1280-7번지	1,464.9	
		기정	6	운북동 1280-8번지	3,678.6	
		기정	7	운북동 1285-9번지	2,660.3	
		기정	8	운북동 1285-8번지	4,258.1	
		기정	10	운북동 1278-5번지	6,869.9	
		변경	10	운북동 1278-5번지	7,021.7	증) 151.8m ²
		기정	12	운북동 1277-7번지	1,545.8	
		기정	13	운북동 1268-3번지	3,696.5	
		기정	14	운북동 1290번지	4,109.9	
		기정	15	운북동 1288번지	3,665.2	
		기정	16	운북동 1287번지	2,108.6	
		기정	17	운북동 1292-12번지	3,761.2	
		기정	18	운북동 1291-11번지	7,240.1	(3,865.8)
		기정	19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1,668.5)
		기정	20	운북동 1367-5번지	11,988.9	(1,077.7)
		기정	21	운북동 1299-6번지	632.3	
		소계	기정	-	-	52,269.1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 면적)
		번호	위치	면적(m ²)		
2단계	완충녹지	기정	18	운북동 1367-2번지	7,240.1	(3,374.3)
		기정	19	운북동 1351-17번지	13,086.1	(10,174.3)
		기정	20	운북동 1367-5번지	11,988.9	(10,911.2)
		기정	22	운북동 1366-10번지	1,698.7	
		기정	23	운북동 1366-11번지	1,527.0	
		기정	24	운북동 1367-3번지	4,390.3	
		기정	25	운북동 1366-9번지	5,585.1	
		기정	26	운북동 1366-2번지	795.6	
		기정	27	운북동 1353-12번지	849.6	
		기정	28	운북동 1361-5번지	5,865.0	
		기정	29	운북동 1352-11번지	1,745.7	
		기정	30	운북동 1359-12번지	2,215.1	
		기정	31	운북동 1362-7번지	814.0	
		기정	32	운북동 1355-6번지	845.7	
		기정	33	운북동 1363-10번지	1,477.5	
소계		기정	-	-	1,243.3	
3단계	완충녹지	기정	19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1,243.3)
계		기정	-	9개소	222,268.1	
소계		기정		-	139,168.6	
1단계	경관녹지	기정	1	운북동 1285-6번지	71,045.3	
		기정	2	운북동 1278-7,8,9,10번지	23,871.2	
		기정	3	운북동 1265-10,11번지 운북동 1270-4,5,6,7번지	30,023.7	
		기정	4	운북동 1285-4번지	12,042.4	(6,754.6)
		기정	6	운북동 1300-22번지	7,473.8	
소계		기정	-	-	83,099.5	
2단계	경관녹지	기정	4	운북동 1367-7,9번지	12,042.4	(5,287.8)
		기정	5	운북동 1367-12번지	1,193.8	
		기정	7	운북동 1366-5번지	27,365.8	
		기정	8	운북동 1366-3번지	7,465.9	
		기정	9	운북동 1353-5,7,9번지	41,786.2	

19. 도시경관계획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 우수관로 【변경 없음】

○ 오수관로 【변경 없음】

○ 상수관로 【변경 없음】

○ 가로등 및 전기 【변경 없음】

○ 통신관로 【변경 없음】

○ 도시가스 【변경 없음】

○ 난방관로 【변경】

-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의거 주관로는 매설하였으나, 집단에너지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추가 관로 매설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사항 없음】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사항 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 환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II. 미단시티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지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m²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19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6년 12월 31일 · 3단계 : 2019년 06월 30일	
변경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0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6년 12월 31일 · 3단계 : 2020년 06월 30일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개발계획 내용 동일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 기정

구분	면적(m ²)	계획년도		
		2011	2016	2019
주택건설용지	440,723.5	206,084.9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6,399.8	199,637.6	26,762.2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89,452.1	33,888.6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0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38,739.7	506,957.4	330,255.9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 변경

구분	면적(m ²)	계획년도		
		2011	2016	2020
주택건설용지	440,571.7	205,933.1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6,399.8	199,637.6	26,762.2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89,452.1	33,888.6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0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38,891.5	507,109.2	330,255.9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5. 용지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변경】 : 게재 생략
6.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붙임1
7.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요지로 공급하는 방안 【해당사항 없음】
8.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해당사항 없음】
9.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해당사항 없음】
10.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변경 없음】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변경 없음】
 - 공원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 면적)	
		번호	위치	면적(m ²)		
합계		기정	-	17개소	436,593.8	
계		기정	-	2개소	10,704.4	
1단계	소공원	기정	1	운북동 1278-4번지	8,119.9	
		기정	2	운북동 1296번지	2,584.5	
계		기정	-	13개소	422,348.4	
1단계	소계	기정	-	-	270,612.6	오기정정
		변경	-	-	260,215.7	
	근린공원	기정	1	운북동 1279번지	39,203.5	
		기정	2	운북동 1280-3번지	62,420.6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34,508.3)
		기정	4	운북동 1273번지	15,940.4	
		기정	5	운북동 1274-1번지	10,677.6	
		기정	6	운북동 1275-1번지	10,000.6	
		기정	7	운북동 1285-5번지 운북동 1285-2번지	22,288.6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65,176.1)
소계		기정	-	-	151,147.2	
2단계	근린공원	기정	9	운북동 1351-13번지	40,277.9	
		기정	10	운북동 1352-7번지	13,795.9	
		기정	11	운북동 1353-11번지	46,718.8	
		기정	12	운북동 1366-7번지	37,580.1	
		기정	13	운북동 1353-2번지	12,774.5	

3단계	소계	기정	-	-	110,669.9	오기정정
		변경	-	-	10,985.5	
	근린공원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10,396.9)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588.6)
계		기정	-	2개소	3,541.0	
1단계	어린이 공원	기정	1	운북동 1297-3번지	1,518.6	
2단계		기정	2	운북동 1353-14번지	2,022.4	

○ 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 면적)	
		번호	위치	면적(m ²)		
총계	기정	-	40개소	327,951.8	증) 151.8m ²	
	변경	-	40개소	328,103.6		
계	기정	-	31개소	105,683.7	증) 151.8m ²	
	변경	-	31개소	105,835.5		
소계	기정	-	-	52,171.3	증) 151.8m ²	
	변경	-	-	52,323.1		
1 단계	완충녹지	기정	1	운북동 1280-9번지	3,515.6	
		기정	2	운북동 1280-10번지	1,400.1	
		기정	3	운북동 1280-11번지	1,618.9	
		기정	4	운북동 1280-12번지	573.4	
		기정	5	운북동 1280-7번지	1,464.9	
		기정	6	운북동 1280-8번지	3,678.6	
		기정	7	운북동 1285-9번지	2,660.3	
		기정	8	운북동 1285-8번지	4,258.1	
		기정	10	운북동 1278-5번지	6,869.9	
		변경	10	운북동 1278-5번지	7,021.7	증) 151.8m ²
		기정	12	운북동 1277-7번지	1,545.8	
		기정	13	운북동 1268-3번지	3,696.5	
		기정	14	운북동 1290번지	4,109.9	
		기정	15	운북동 1288번지	3,665.2	
		기정	16	운북동 1287번지	2,108.6	
		기정	17	운북동 1292-12번지	3,761.2	
		기정	18	운북동 1291-11번지	7,240.1	(3,865.8)
		기정	19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1,668.5)
		기정	20	운북동 1367-5번지	11,988.9	(1,077.7)
		기정	21	운북동 1299-6번지	632.3	

2단계	소계	기정	-	-	52,269.1	
	완충녹지	기정	18	운북동 1367-2번지	7,240.1	(3,374.3)
		기정	19	운북동 1351-17번지	13,086.1	(10,174.3)
		기정	20	운북동 1367-5번지	11,988.9	(10,911.2)
		기정	22	운북동 1366-10번지	1,698.7	
		기정	23	운북동 1366-11번지	1,527.0	
		기정	24	운북동 1367-3번지	4,390.3	
		기정	25	운북동 1366-9번지	5,585.1	
		기정	26	운북동 1366-2번지	795.6	
		기정	27	운북동 1353-12번지	849.6	
		기정	28	운북동 1361-5번지	5,865.0	
		기정	29	운북동 1352-11번지	1,745.7	
		기정	30	운북동 1359-12번지	2,215.1	
		기정	31	운북동 1362-7번지	814.0	
		기정	32	운북동 1355-6번지	845.7	
기정	33	운북동 1363-10번지	1,477.5			
3단계	소계	기정	-	-	1,243.3	
	완충녹지	기정	19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1,243.3)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 면적)		
	번호	위치	면적(m ²)			
계	기정	-	9개소	222,268.1		
1단계	소계	기정	-	139,168.6		
1단계	경관녹지	기정	1	운북동 1285-6번지	71,045.3	
		기정	2	운북동 1278-7,8,9,10번지	23,871.2	
		기정	3	운북동 1265-10,11번지 운북동 1270-4,5,6,7번지	30,023.7	
		기정	4	운북동 1285-4번지	12,042.4	(6,754.6)
		기정	6	운북동 1300-22번지	7,473.8	
2단계	소계	기정	-	83,099.5		
2단계	경관녹지	기정	4	운북동 1367-7,9번지	12,042.4	(5,287.8)
		기정	5	운북동 1367-12번지	1,193.8	
		기정	7	운북동 1366-5번지	27,365.8	
		기정	8	운북동 1366-3번지	7,465.9	
		기정	9	운북동 1353-5,7,9번지	41,786.2	

11.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12.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변경】 : 게재 생략
1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 없음】
15.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면적(㎡)	미단시ٹی개발(주)		인천도시공사		미단시ٹی개발(주)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2,713,186.2	1,831,068.4	100.0	869,605.9	100.0	12,511.9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60,191.7	116,574.7	6.4	43,617.0	5.0	-		
	공동주택	280,531.8	89,510.2	4.9	191,021.6	22.0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0.2	8,294.0	1.0	-		
	준주거	89,452.1	33,888.6	1.9	55,563.5	6.4	-		
	소계	542,587.1	244,091.0	13.4	298,496.1	34.4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226,399.8	199,637.6	10.9	26,762.2	3.1	-		
	업무시설	54,347.7	46,227.2	2.5	8,120.5	0.9	-		
	주상복합	54,102.9	54,102.9	3.0	0.0	0.0	-		
	소계	334,850.4	299,967.7	16.4	34,882.7	4.0	-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12,000.4	0.7	11,982.4	1.4	-		
	숙박시설	129,159.1	129,159.1	7.0	0.0	0.0	-		
	위락시설	103,966.2	91,038.2	5.0	12,928.0	1.5	-		
	소계	257,108.1	232,197.7	12.7	24,910.4	2.9	-		
유보지	133,138.8	133,138.8	7.3	0.0	0.0	-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31,666.5	915,513.0	49.9	503,641.6	57.9	12,511.9	100.0	
	학교	24,237.3	-	-	24,237.3	2.8	-	-	
	교육시설	96,093.3	96,093.3	5.2	0.0	0.0	-	-	
	유치원	3,432.9	1,482.0	0.1	1,950.9	0.2	-	-	
	광장	26,661.3	-	-	26,661.3	3.1	-	-	
	소공원	10,704.4	10,704.4	0.6	0.0	0.0	-	-	
	근린공원	422,348.4	260,215.7	14.2	151,147.2	17.4	10,985.5	87.8	
	어린이공원	3,541.0	1,518.6	0.1	2,022.4	0.2	-	-	
	완충녹지	105,683.7	52,171.3	2.8	52,269.1	6.1	1,243.3	9.9	
	경관녹지	222,268.1	139,168.6	7.6	83,099.5	9.6	-	-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5,760.1	0.3	6,492.2	0.8	-	-	
	병원	39,712.8	39,712.8	2.2	0.0	0.0	-	-	
	복지	672.3	330.6	0.0	341.7	0.0	-	-	
	발전시설	19,001.8	19,001.8	1.0	0.0	0.0	-	-	
	공공청사	3,987.4	3,987.4	0.2	0.0	0.0	-	-	
	주차장	21,427.1	15,953.0	0.9	5,474.1	0.6	-	-	
	도로	415,819.8	268,975.9	14.7	146,560.8	16.8	283.1	2.3	
공공공지	437.5	437.5	0.0	0.0	0.0	-	-		
배수지	3,385.1	-	-	3,385.1	0.4	-	-		
공공 시설 용지	종교시설용지	2,032.3	671.0	0.0	1,361.3	0.2	-	-	
	주유소	5,489.2	5,489.2	0.3	0.0	0.0	-	-	
	창고시설	2,504.0	-	-	2,504.0	0.3	-	-	
	군사시설	3,809.8	-	-	3,809.8	0.4	-	-	
	소계	1,445,501.8	921,673.2	49.9	511,316.7	58.8	12,511.9	100.0	

- 변경

구분		계 면적(m ²)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미단시蒂개발(주)		인천도시공사		미단시蒂개발(주)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계		2,713,186.2	1,831,068.4	100.0	869,605.9	100.0	12,511.9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60,191.7	116,574.7	6.4	43,617.0	5.0	-	-	
	공동주택	280,380.0	89,358.4	4.9	191,021.6	22.0	-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0.2	8,294.0	1.0	-	-	
	준주거	89,452.1	33,888.6	1.9	55,563.5	6.4	-	-	
	소계	542,435.3	243,939.2	13.4	298,496.1	34.4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226,399.8	199,637.6	10.9	26,762.2	3.1	-	-	
	업무시설	54,347.7	46,227.2	2.5	8,120.5	0.9	-	-	
	주상복합	54,102.9	54,102.9	3.0	0.0	0.0	-	-	
	소계	334,850.4	299,967.7	16.4	34,882.7	4.0	-	-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12,000.4	0.7	11,982.4	1.4	-	-	
	숙박시설	129,159.1	129,159.1	7.0	0.0	0.0	-	-	
	위락시설	103,966.2	91,038.2	5.0	12,928.0	1.5	-	-	
	소계	257,108.1	232,197.7	12.7	24,910.4	2.9	-	-	
유보지		133,138.8	133,138.8	7.3	0.0	0.0	-	-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31,818.3	915,664.8	49.9	503,641.6	57.9	12,511.9	100.0	
	학교	24,237.3	-	-	24,237.3	2.8	-	-	
	교육시설	96,093.3	96,093.3	5.2	0.0	0.0	-	-	
	유치원	3,432.9	1,482.0	0.1	1,950.9	0.2	-	-	
	광장	26,661.3	-	-	26,661.3	3.1	-	-	
	소공원	10,704.4	10,704.4	0.6	0.0	0.0	-	-	
	근린공원	422,348.4	260,215.7	14.2	151,147.2	17.4	10,985.5	87.8	
	어린이공원	3,541.0	1,518.6	0.1	2,022.4	0.2	-	-	
	완충녹지	105,835.5	52,323.1	2.8	52,269.1	6.1	1,243.3	9.9	
	경관녹지	222,268.1	139,168.6	7.6	83,099.5	9.6	-	-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5,760.1	0.3	6,492.2	0.8	-	-	
	병원	39,712.8	39,712.8	2.2	0.0	0.0	-	-	
	복지	672.3	330.6	0.0	341.7	0.0	-	-	
	발전시설	19,001.8	19,001.8	1.0	0.0	0.0	-	-	
	공공청사	3,987.4	3,987.4	0.2	0.0	0.0	-	-	
	주차장	21,427.1	15,953.0	0.9	5,474.1	0.6	-	-	
	도로	415,819.8	268,975.9	14.7	146,560.8	16.8	283.1	2.3	
	공공공지	437.5	437.5	0.0	0.0	0.0	-	-	
	배수지	3,385.1	-	-	3,385.1	0.4	-	-	
	종교시설용지	2,032.3	671.0	0.0	1,361.3	0.2	-	-	
주유소	5,489.2	5,489.2	0.3	0.0	0.0	-	-		
창고시설	2,504.0	-	-	2,504.0	0.3	-	-		
군사시설	3,809.8	-	-	3,809.8	0.4	-	-		
소계	1,445,653.6	921,825.0	50.2	511,316.7	58.8	12,511.9	100.0		

○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 : 1단계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변경】

- 기정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m ²)					
합계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4,091.0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116,574.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MCDC 공급
				수의계약	협약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인천도시 공사공급
			이주대책자, 주민특별공급대상 (11세대)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기준면적초과 감정가격공급)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89,510.2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근린생활용지	4,117.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준주거용지	33,888.6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299,967.7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299,967.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관광 시설 용지						
소계		232,197.7	-	-		
관광 시설 용지	숙박시설용지	129,159.1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문화시설용지	12,000.4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위락시설용지	91,038.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처분대상 토지		면적(m ²)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15,913.1	-	-	-	
	유치원	1,482.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종교시설	671.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 종교법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차장	15,953.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발전시설	19,001.8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용의청사	3,987.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교육시설	96,093.3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병원	39,712.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복지시설	330.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유소	5,489.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근린공원	260,215.7	관리기관	무상 양여	무상양여		
어린이공원	1,518.6					
소공원	10,704.4					
완충녹지	52,171.3					
경관녹지	139,168.6					
도로	268,975.9					
공공공지	437.5					
투자유치 용지	유보지	133,138.8	향후 용도부여 후 각 용도별 기준에 의하여 처분			

- 변경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m ²)					
합계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3,939.2				
	단독주택용지	116,574.7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MCDC 공급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인천도시공사 공급
			이주대책자, 주민특별공급대상 (11세대)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기준면적초과 감정가격공급)	
			협의를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89,358.4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감정가격 협약가격	
	근린생활용지	4,117.5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준주거용지	33,888.6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299,967.7	-	-		
	상업시설용지	299,967.7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관광 시설 용지	소계	232,197.7	-	-		
	숙박시설용지	129,159.1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문화시설용지	12,000.4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위락시설용지	91,038.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21,825.0	-	-		
	유치원	1,482.0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671.0	협의양도 종교법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15,953.0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발전시설	19,001.8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공용의청사	3,987.4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교육시설	96,093.3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병원	39,712.8	실수요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협약가격		

처분대상 토지		구분	면적(m ²)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공공 시설 용지	복지시설						
		수의계약	협약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유소	5,489.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약가격		
	근린공원	260,215.7	관리기관	무상 양여	무상양여		
	어린이공원	1,518.6					
	소공원	10,704.4					
	완충녹지	52,323.1					
	경관녹지	139,168.6					
도로	274,736.0						
공공공지	437.5						
투자유치 용지	유보지	133,138.8	향후 용도부여 후 각 용도별 기준에 의하여 처분				

○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 : 2단계 인천도시공사)

【변경 없음】

처분대상 토지		구분	면적(m ²)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98,496.1		-	-	
	단독주택용지	43,617.0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기준면 적초과 감정가격공급)		
			협약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191,021.6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국가,지자체,주택공사, 지방공사,외국인투자자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인천지역 소재업체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용지	8,294.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준주거용지	55,563.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가격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하공급 가능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34,882.7		-	-	
	상업업무 시설용지	34,882.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이하 협약가격 공급가능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분대상 토지		면적(m ²)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관광 시설 용지	소계	24,910.4	-	-	-		
	문화시설용지	11,982.4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회약	감정가격 이하 협약가격 공급가능		
	위락시설용지	12,928.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회약	협약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회약				협약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11,316.7	-	-	-	-	
	학교	계	26,188.2	-	-	-	-
		초등학교	12,177.9	국가·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중·고등학교	12,059.4	국가·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
		유치원	1,95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종교시설	1,361.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약양도 종교법인	경쟁입찰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차장	5,474.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회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복지시설	341.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국가·지자체	수의회약	감정가격	-	
	광장	26,661.3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근린공원	151,147.2					
	어린이공원	2,022.4					
	완충녹지	52,269.1					
	경관녹지	83,099.5					
도로	153,053.0						
배수지	3,385.1						
창고시설	2,504.0	선주조합	수의회약	감정가격	-		
군사시설	3,809.8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 : 3단계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변경 없음】

처분대상 토지		면적(m ²)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합계		12,511.9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2,511.9	-	-	-	
	근린공원	10,985.5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완충녹지	1,243.3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도로	283.1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1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
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없음】

1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9.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
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 【변경】

-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변경 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m ²)	비고
계	기정	98	107,903.3	
도로	기정	22	30,195.0	
구거	기정	7	3,542.0	
유지	기정	2	20,130.0	
제방	기정	3	11,462.0	
잡종지	기정	2	121.0	
전	기정	21	9,544.0	
답	기정	32	27,840.3	
대지	기정	3	555.0	
묘지	기정	1	221.0	
임야	기정	5	4,293.0	

○ 대체시설(국가 귀속분) 총괄 【변경】

구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m ²)	비고	
계	기정	-	-	-	1,226,911.4		
	변경	-	-	-	1,227,063.2	증) 151.8	
도로	기정	-	67	19,489	428,072.1		
	소로	3~10	40	5,499	47,756.1		
	중로	15~24	24	9,491	202,904.3		
	대로	27~40	3	4,499	177,411.7		
광장	기정	-	1	-	26,661.3		
녹지	기정	-	40	-	327,951.8		
	변경	-	40	-	328,103.6	증) 151.8	
	완충녹지	기정	-	31	-	105,683.7	
		변경	-	31	-	105,835.5	증) 151.8
경관녹지	기정	-	9	-	222,268.1		
공원	기정	-	17	-	436,593.8		
	근린공원	기정	13	-	422,348.4		
	어린이공원	기정	2	-	3,541.0		
	소공원	기정	2	-	10,704.4		
공공공지	기정	-	1	-	437.5		
배수지	기정	-	1	-	3,385.1		
군사시설	기정	-	1	-	3,809.8		

20.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2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해당 사항 없음】
22.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 【변경】 : (단계별시행계획 참고, 게재 생략)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없음】

2) 공간시설 【변경 없음】

① 광장 【변경 없음】

② 녹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105,683. 7	증) 151.8	105,835.5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0-9번지	3,515.6	-	3,515.6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0-10번지	1,400.1	-	1,400.1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0-11번지	1,618.9	-	1,618.9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0-12번지	573.4	-	573.4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0-7번지	1,464.9	-	1,464.9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0-8번지	3,678.6	-	3,678.6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가스 정압기 (20m ²) 포함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5-9번지	2,660.3	-	2,660.3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5-8번지	4,258.1	-	4,258.1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78-5번지	6,869.9	증) 151.8	7,021.7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77-7번지	1,545.8	-	1,545.8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68-3번지	3,696.5	-	3,696.5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90번지	4,109.9	-	4,109.9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8번지	3,665.2	-	3,665.2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87번지	2,108.6	-	2,108.6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92-12번지	3,761.2	-	3,761.2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91-11번지	7,240.1	-	7,240.1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	13,086.1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00-21번지	11,988.9	-	11,988.9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299-6번지	632.3	-	632.3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6-10번지	1,698.7	-	1,698.7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6-11번지	1,527.0	-	1,527.0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7-3번지	4,390.3	-	4,390.3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6-9번지	5,585.1	-	5,585.1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6-2번지	795.6	-	795.6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53-12번지	849.6	-	849.6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1-5번지	5,865.0	-	5,865.0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52-11번지	1,745.7	-	1,745.7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30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59-12번지	2,215.1	-	2,215.1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2-7번지	814	-	814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32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55-6번지	845.7	-	845.7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기정	33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63-10번지	1,477.5	-	1,477.5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소계				-	222,268.1	-	222,268.1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285-6번지	71,045.3	-	71,045.3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278-7,8,9,10번지	23,871.2	-	23,871.2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265-10,11번지 운북동 1270-4,5,6,7번지	30,023.7	-	30,023.7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285-4번지 1367-7,9번지	12,042.4	-	12,042.4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367-12번지	1,193.8	-	1,193.8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300-22번지	7,473.8	-	7,473.8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366-5번지	27,365.8	-	27,365.8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366-3번지	7,465.9	-	7,465.9	재경부고시 제2006-41호 (2006.10.31)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1353-5,7,9번지	41,786.2	-	41,786.2	지경부고시 제2008-58호 (2008. 6. 3)	

③ 공원 【변경 없음】

④ 공공공지 【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4)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5)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단독1	①	35,762.2	-1	35,762.2	1266	-	• 분할 -최소면적 : 30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단독2	①	43,117.9	-1	43,117.9	1289	-	"
단독3	①	8,945.8	-1	8,945.8	1286	-	"
소계		87,825.9		87,825.9			
단독4	①	980.9	-1	264.7	1361	-1	
			-2	264.7	1361	-2	
			-3	265.4	1361	-3	
			-4	186.1	1361	-4	
	②	1,624.0	-1	166.0	1362	-1	
			-2	166.0	1362	-2	
			-3	166.0	1362	-3	
			-4	166.0	1362	-4	
			-5	719.9	1362	-5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6	240.1	1362	-6	
	③	2,907.6	-1	640.0	1363	-1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2	640.2	1363	-2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3	232.7	1363	-3	
			-4	232.4	1363	-4	
			-5	232.6	1363	-5	
			-6	232.8	1363	-6	
			-7	232.8	1363	-7	
-8			232.7	1363	-8		
-9			231.4	1363	-9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단독4	④	5,556.3	-1	265.2	1365	-1		
			-2	265.3	1365	-2		
			-3	265.3	1365	-3		
			-4	265.5	1365	-4		
			-5	265.3	1365	-5		
			-6	264.9	1365	-6		
			-7	264.6	1365	-7		
			-8	264.4	1365	-8		
			-9	264.4	1365	-9		
			-10	228.8	1365	-10		
			-11	216.6	1365	-11		
			-12	171.0	1365	-12		
			-13	168.2	1365	-13		
			-14	264.8	1365	-14		
			-15	264.8	1365	-15		
			-16	264.9	1365	-16		
			-17	265.5	1365	-17		
			-18	265.6	1365	-18		
			-19	265.1	1365	-19		
			-20	265.6	1365	-20		
			-21	265.7	1365	-21		
			-22	264.8	1365	-22		
		⑤	5,036.1	-1	265.6	1364	-1	
	-2			265.0	1364	-2		
	-3			264.7	1364	-3		
	-4		264.9	1364	-4			
	-5		265.0	1364	-5			
	-6		265.0	1364	-6			
	-7		265.2	1364	-7			
	-8		265.0	1364	-8			
	-9		265.0	1364	-9			
	-10		175.2	1364	-10			
	-11		180.8	1364	-11			
	-12		170.0	1364	-12			
	-13		265.6	1364	-13			
	-14		265.9	1364	-14			
	-15		265.8	1364	-15			
	-16		265.6	1364	-16			
	-17		265.4	1364	-17			
	-18		265.7	1364	-18			
	-19		265.9	1364	-19			
	-20		264.8	1364	-20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단독4	⑥	5,393.3	-1	265.0	1361	-6	
			-2	264.4	1361	-7	
			-3	264.6	1361	-8	
			-4	264.9	1361	-9	
			-5	265.1	1361	-10	
			-6	264.5	1361	-11	
			-7	264.6	1361	-12	
			-8	264.8	1361	-13	
			-9	264.5	1361	-14	
			-10	265.4	1361	-15	
			-11	265.4	1361	-16	
			-12	265.4	1361	-17	
			-13	265.2	1361	-18	
			-14	265.4	1361	-19	
			-15	265.0	1361	-20	
			-16	264.8	1361	-21	
			-17	264.6	1361	-22	
			-18	264.8	1361	-23	
			-19	225.0	1361	-24	
			-20	195.8	1361	-25	
			-21	204.1	1361	-26	
소계		21,498.2					
합계		109,324.1					

주)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획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획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획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 경우 합병된 획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획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이주단지1	①	3,326.0	-1	332.8	1291	-1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2	332.2	1291	-2	"
			-3	332.5	1291	-3	"
			-4	332.7	1291	-4	"
			-5	332.5	1291	-5	"
			-6	332.6	1291	-6	"
			-7	332.8	1291	-7	"
			-8	332.7	1291	-8	"
			-9	332.6	1291	-9	"
			-10	332.6	1291	-10	"
	②	3,658.2	-1	332.9	1292	-1	"
			-2	332.6	1292	-2	"
			-3	332.6	1292	-3	"
			-4	332.4	1292	-4	"
			-5	332.5	1292	-5	"
			-6	332.6	1292	-6	"
			-7	332.5	1292	-7	"
			-8	332.4	1292	-8	"
			-9	332.5	1292	-9	"
			-10	332.7	1292	-10	"
	③	3,756.9	-1	431.7	1293	-11	"
			-2	333.0	1293	-10	"
			-3	333.0	1293	-9	"
			-4	333.0	1293	-8	"
			-5	332.9	1293	-7	"
			-6	333.4	1293	-6	"
			-7	333.5	1293	-5	"
			-8	333.3	1293	-4	"
			-9	333.6	1293	-3	"
			-10	333.3	1293	-2	"
			-11	326.2	1293	-1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이주단지1	④	2,759.2	-1	332.9	1294	-8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2	332.8	1294	-7	"
			-3	333.0	1294	-6	"
			-4	337.8	1294	-5	"
			-5	422.7	1294	-4	"
			-6	333.2	1294	-3	"
			-7	333.5	1294	-2	"
			-8	333.3	1294	-1	"
	⑤	3,332.1	-1	339.2	1295	-10	"
			-2	332.9	1295	-9	"
			-3	332.9	1295	-8	"
			-4	332.9	1295	-7	"
			-5	329.9	1295	-6	"
			-6	329.9	1295	-5	"
			-7	330.4	1295	-4	"
			-8	333.3	1295	-3	"
			-9	333.3	1295	-2	"
			-10	337.4	1295	-1	"
	⑥	4,310.0	-1	332.6	1298	-14	"
			-2	329.4	1298	-13	"
			-3	330.7	1298	-12	"
			-4	330.7	1298	-11	"
			-5	330.6	1298	-10	"
			-6	330.6	1298	-9	"
			-7	333.4	1298	-8	"
			-8	339.2	1298	-7	"
			-9	330.5	1298	-6	"
			-10	330.4	1298	-5	"
			-11	330.4	1298	-4	"
			-12	330.7	1298	-3	"
			-13	330.8	1298	-2	"
	⑦	1,003.3	-1	333.1	1299	-5	"
			-2	330.7	1299	-4	"
			-3	339.5	1299	-1	"
	⑧	4,291.2	-1	330.2	1300	-1	"
			-2	330.1	1300	-2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이주단지1	⑧	4,291.2	-3	329.8	1300	-3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4	329.8	1300	-4	"		
			-5	329.7	1300	-5	"		
			-6	330.0	1300	-6	"		
			-7	330.1	1300	-7	"		
			-8	330.3	1300	-8	"		
			-9	329.9	1300	-9	"		
			-10	330.5	1300	-10	"		
			-11	330.3	1300	-11	"		
			-12	330.2	1300	-12	"		
			-13	330.3	1300	-13	"		
			⑨	2,311.9	-1	330.3	1300	-14	"
					-2	330.3	1300	-15	"
	-3	330.2			1300	-16	"		
	-4	330.4			1300	-17	"		
	-5	330.2			1300	-18	"		
	-6	330.2			1300	-19	"		
	-7	330.3			1300	-20	"		
	소계		28,748.8						
	이주단지2	①	1,318.9	-1	328.3	1355	-1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2				330.0	1355	-2	"		
-3				330.4	1355	-3	"		
-4				330.2	1355	-5	"		
-1				329.6	1359	-1	"		
②		3,725.7	-2	330.4	1359	-2	"		
			-3	330.2	1359	-3	"		
			-4	330.3	1359	-4	"		
			-5	330.3	1359	-5	"		
			-6	330.6	1359	-6	"		
			-7	330.4	1359	-7	"		
			-8	329.9	1359	-8	"		
			-9	330.8	1359	-9	"		
			-10	330.7	1359	-10	"		
			-11	422.5	1359	-11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이주단지2	③	2,232.2	-1	407.5	1358	-1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2	426.8	1358	-2	"
			-3	377.6	1358	-3	"
			-4	335.9	1358	-4	"
			-5	344.0	1358	-5	"
			-6	340.4	1358	-6	"
	④	5,699.5	-1	389.4	1357	-18	"
			-2	330.2	1357	-17	"
			-3	329.9	1357	-16	"
			-4	329.7	1357	-15	"
			-5	329.7	1357	-14	"
			-6	329.8	1357	-13	"
			-7	330.3	1357	-12	"
			-8	329.6	1357	-11	"
			-9	330.8	1357	-10	"
			-10	329.5	1357	-8	"
			-11	330.1	1357	-7	"
			-12	330.0	1357	-6	"
			-13	330.0	1357	-5	"
			-14	329.7	1357	-4	"
			-15	330.0	1357	-3	"
			-16	330.4	1357	-2	"
			-17	360.4	1357	-1	"
	⑤	4,189.0	-1	354.7	1356	-1	"
			-2	386.1	1356	-2	"
			-3	382.4	1356	-3	"
			-4	419.5	1356	-4	"
			-5	337.8	1356	-5	"
			-6	329.7	1356	-6	"
			-7	329.6	1356	-7	"
			-8	329.3	1356	-8	"
			-9	330.4	1356	-9	"
			-10	329.9	1356	-10	"
-11			329.9	1356	-11	"	
-12			329.7	1356	-12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이주단지2	⑥	4,953.5	-1	329.8	1354	-2	• 분할 -최소면적 : 150m ²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 ≥ 1/3 -차량출입허용구간내 차량출입가능
			-2	330.5	1354	-3	"
			-3	330.3	1354	-4	"
			-4	330.4	1354	-5	"
			-5	330.5	1354	-6	"
			-6	330.6	1354	-7	"
			-7	330.1	1354	-8	"
			-8	330.5	1354	-9	"
			-9	330.1	1354	-10	"
			-10	330.2	1354	-11	"
			-11	330.8	1354	-12	"
			-12	329.7	1354	-13	"
			-13	330.0	1354	-14	"
			-14	330.0	1354	-15	"
			-15	330.0	1354	-16	"
소계		22,118.8					
합계		50,867.6					

주)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획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획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획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 경우 합병된 획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획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①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근린1	①	1,917.3	-1	1,917.3	1268	-2	
근린2	①	2,200.2	-1	2,200.2	1297	-1	
근린3	①	4,964.6	-2	604.7	1360	-1	
			-2	719.1	1360	-2	
			-3	970.7	1360	-3	
			-4	1,603.5	1360	-4	
			-5	1,066.6	1360	-5	
근린4	①	3,329.4	-1	989.4	1361	-32	
			-2	981.0	1361	-31	
			-3	694.7	1361	-30	
			-4	664.3	1361	-29	
계		12,411.5	-	12,411.5			

주) 연접한 획지의 합병 가능

②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준주거 1	①	11,000.0	-1	11,000.0	1285	-3	
준주거 2	①	55,563.5	-1	55,563.5	1353	-13	
준주거 3	①	9,889.0	-1	9,889.0	1265	-7	
준주거 4	①	12,999.6	-1	12,999.6	1285	-1	
계		89,452.1	-	89,452.1			

주) 연결한 획지의 합병 가능

3) 공동주택 【변경】

①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공동1	①	44,686.0	-1	44,686.0	1278	-1	감) 52.9m ²
공동2	①	44,672.4	-1	44,672.4	1278	-2	감) 98.9m ²
공동4	①	28,190.9	-1	28,190.9	1351	-15	
공동5	①	30,987.0	-1	30,987.0	1351	-16	
공동7	①	24,882.3	-1	24,882.3	1367	-1	
공동8	①	82,060.4	-1	82,060.4	1366	-8	
공동9	①	24,901.0	-1	24,901.0	1366	-1	
계		280,380.0	-	280,380.0	감) 151.8m ²		

주) 획지의 분할 불허하나 연결한 획지의 합병 가능

② 주상복합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주상1	①	17,471.1	-1	17,471.1	1269	-	
주상2	①	36,631.8	-1	36,631.8	1277	-6	
계		54,102.9	-	54,102.9			

4) 상업·업무용지 【변경 없음】

① 중심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중상1	①	8,872.5	-1	8,872.5	1271	-1	분할가능
중상2	①	12,640.3	-1	12,640.3	1271	-2	
중상3	①	11,998.2	-1	11,998.2	1271	-3	
중상4	①	12,842.8	-1	12,842.8	1271	-4	
중상5	①	11,649.1	-1	11,649.1	1271	-5	
중상6	①	10,833.3	-1	10,833.3	1271	-6	분할가능
중상7	①	11,453.9	-1	11,453.9	1271	-7	
중상8	①	11,265.1	-1	11,265.1	1271	-8	
중상9	①	10,587.4	-1	10,587.4	1272	-1	
중상10	①	10,991.9	-1	10,991.9	1272	-2	
중상11	①	10,516.6	-1	10,516.6	1272	-3	
중상12	①	11,004.4	-1	11,004.4	1272	-4	
계		134,655.5	-	134,655.5			

주1) 연접한 획지의 합병 가능

주2) 중심상업용지를 획지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는 분할 최소면적이 2,500m²이상, 5~8은 분할 최소면적이 2,000m²이상, 9~12는 분할 최소면적 1,500m²이상이어야 하며, 건축계획 수립시 교통량을 산정하여 결과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사도는 최소면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일상1	①	3,573.0	-1	1,749.6	1351	-1	
			-2	1,823.4	1351	-2	
일상2	①	3,573.4	-1	1,750.0	1351	-11	
			-2	1,823.4	1351	-10	
일상3	①	5,698.1	-1	1,653.0	1351	-3	
			-2	1,653.1	1351	-4	
			-3	2,392.0	1351	-5	
일상4	①	5,696.1	-1	1,653.0	1351	-9	
			-2	1,653.1	1351	-8	
			-3	2,390.0	1351	-7	
일상5	①	2,539.8	-1	2,539.8	1359	-14	
일상6	①	2,567.5	-1	1,360.9	1352	-1	
			-2	1,206.6	1352	-2	
일상7	①	3,114.3	-1	1,553.8	1352	-4	
			-2	1,560.5	1352	-5	
일상8	①	15,237.6	-1	15,237.6	1265	-8	
일상9	①	25,665.1	-1	25,665.1	1276	-7	
					1305	-1	
일상10	①	11,379.4	-1	11,379.4	1277	-3	
일상11	①	5,000.0	-1	5,000.0	1276	-3	
일상12	①	7,700.0	-1	7,700.0	1277	-9	
계		91,744.3	-	91,744.3			

주) 연접한 획지의 합병 가능

③ 업무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업무1	①	11,526.0	-1	3,611.0	1274	-2	
			-2	3,466.6			
			-3	2,236.9			
			-4	2,211.5			
업무2	①	11,856.4	-1	3,189.6	1276	-1	
			-2	4,042.8	1276	-8	
			-3	2,307.6	1276	-10	
			-4	2,316.4	1276	-9	
업무3	①	11,213.7	-1	11,213.7	1275	-3	
업무4	①	11,631.1	-1	2,954.5	1277	-1	
			-2	2,979.6			
			-3	3,429.6			
			-4	2,267.4			
업무5	①	8,120.5	-1	3,300.0	1352	-13	
			-2	4,820.5	1352	-14	
계		54,347.7	-	54,347.7			

주) 연접한 획지의 합병 가능

5) 숙박 · 위락시설용지 【변경 없음】

① 숙박 · 위락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숙박1	①	46,628.8	-1	46,628.8	1270	-1	
숙박2	①	47,492.4	-1	47,492.4	1270	-2	
숙박3	①	35,037.9	-1	35,037.9	1283	-	
위락1	①	91,038.2	-1	91,038.2	1284	-	
위락2	①	12,928.0	-1	12,928.0	1353	-3	
계		233,125.3	-	233,125.3			

주1) 연접한 동일 토지이용에 한하여 획지의 합병 가능

주2) 획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별도의 획지분할계획 및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① 학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 유치원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유치원1	①	1,482.0	-1	1,482.0	1268	-1	
유치원2	①	1,178.6	-1	1,178.6	1351	-14	
유치원3	①	772.3	-1	772.3	1353	-15	
계		3,432.9	-	3,432.9			

○ 초등학교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초등학교	①	12,177.9	-1	12,177.9	1352	-10	
계		12,177.9	-	12,177.9			

○ 중·고등학교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중·고등학교	①	12,059.4	-1	12,059.4	1352	-8	
계		12,059.4	-	12,059.4			

○ 교육연구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교육연구시설1	①	31,199.7	-1	31,199.7	1280	-6	
교육연구시설2	①	32,820.8	-1	32,820.8	1280	-5	
교육연구시설3	①	32,072.8	-1	32,072.8	1280	-4	
계		96,093.3	-	96,093.3			

주) 연접한 획지의 합병 가능

② 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노인복지시설1	①	330.6	-1	330.6	1299	-2	
노인복지시설2	①	341.7	-1	341.7	1354	-1	
계		672.3	-	672.3			

③ 문화 및 의료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문화1	①	12,000.4	-1	12,000.4	1267	-	
문화2	①	11,982.4	-1	11,982.4	1353	-4	
병원	①	39,712.8	-1	39,712.8	1280	-1	
계		63,695.6	-	63,695.6			

④ 열공급설비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발전시설	①	19,001.8	-1	19,001.8	1281	-	
계		19,001.8	-	19,001.8			

⑤ 공공업무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공공청사	①	3,987.4	-1	3,987.4	1280	-3	
계		3,987.4	-	3,987.4			

⑥ 종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종교1	①	671.0	-1	671.0	1297	-2	
종교2	①	1,361.3	-1	1,361.3	1361	-28	
계		2,032.3	-	2,032.3			

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주유1	①	1,482.6	-1	1,482.6	1280	-2	
주유2	①	4,006.6	-1	2132.1	1265	-3	
			-2	1874.5	1265	-4	
계		5,489.2	-	5,489.2			

⑧ 창고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창고	①	2,504.0	-1	2,504.0	1353	-1	
계		2,504.0	-	2,504.0			

⑨ 군사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군사	①	3,809.8	-1	3,809.8	1353	-6	
계		3,809.8	-	3,809.8			

⑩ 주차장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주차1	①	1,926.4	-1	1,926.4	1265	-6	
주차2	①	2,795.1	-1	2,795.1	1277	-4	
					1277	-3	
주차3	①	9,061.4	-1	9,061.4	1275	-2	
주차4	①	2,170.1	-1	2,170.1	1299	-3	
주차5	①	4,094.4	-1	4,094.4	1359	-13	
주차6	①	1,379.7	-1	1,379.7	1352	-3	
계		21,427.1	-	21,427.1			

⑪ 유보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지번		비고
			위치	면적(m ²)	본번	부번	
유보지1	①	76,410.5	-1	76,410.5	1278	-3	
유보지2	①	56,728.3	-1	56,728.3	1282	-	
계		133,138.8	-	133,138.8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단독주택용지 **【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1	이주단지1 (1294-1~8) (1295-1~10) (1298-2~14) (1299-1) (1299-4~5) (1300-1~20) 이주단지2 (1354-2~16) (1355-1~5) (1356-1~12) (1357-1~18) (1358-1~6) (1359-1~11)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획지당가구수	• 3가구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2	단독1 (1266) 단독2 (1289) 단독3 (1286) 단독4 (1361-1~4) (1361-6~26) (1362-1~6) (1363-1~9) (1364-1~20) (1365-1~22)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변경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1	이주단지1 (1291-1~10) (1292-1~11) (1293-1~11) (1294-1~8) (1295-1~10) (1298-2~14) (1299-1) (1299-4~5) (1300-1~20)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공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이주단지2 (1354-2~16) (1355-1~3) (1355-5) (1356-1~12) (1357-1~8) (1357-10~18) (1358-1~6) (1359-1~1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획지당가구수	• 3가구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2	단독1 (1266) 단독2 (1289) 단독3 (1286) 단독4 (1361-1~4) (1361-6~26) (1362-1~6) (1363-1~9) (1364-1~20) (1365-1~22)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②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변경】

○ 근생시설용지 【변경 없음】

○ 준주거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3	준주거1 (1285-3) 준주거4 (1285-1) 준주거5 (1282)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단, 준주거5는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SR4	준주거2 (1353-1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5	준주거3 (1265-7)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변경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3	준주거1 (1285-3) 준주거4 (1285-1)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4	준주거2 (1353-1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5	준주거3 (1265-7)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③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 주상복합용지 【변경 없음】
- ④ 상업·업무용지 【변경 없음】
- ⑤ 숙박·위락시설용지 【변경 없음】
- 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학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 교육연구시설용지 【변경 없음】
 - 유치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 문화시설용지 【변경 없음】
 - 병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 복지시설용지 【변경 없음】
 - 발전시설용지 【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 【변경 없음】
 - 종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1	주차1 (1265-6)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2	주차2 (1277-4,3) 주차3 (1275-2) 주차6 (1352-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PA3	주차4 (1299-3) 주차5 (1359-1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변경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1	주차1 (1265-6)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도면 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2	주차2 (1277-4,3) 주차3 (1275-2) 주차6 (1352-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PA3	주차4 (1299-3) 주차5 (1359-1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변경 없음】
- 창고시설용지 【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 【변경 없음】
- 유보지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기정	변경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32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연결 부지와외의 공동출입구를 포함하여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32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41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통합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41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55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통합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55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시행지침 중 건축물에 관한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과 변경 없는 사항은 게재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17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및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6.25. ~ 7. 9.(15일간)
2. 내 용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3. 공고 및 게시장소 : 공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4.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과세대상	무단점유 기간	부과금액(원)	수신주소(발송당시)
이*순 [‘56.7.30.(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78-1번지 (점유면적 16.66m)	2018. 1. 1.~ 2018.12.31.	536,78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3-**(동춘동)
김*숙 [‘54.1.3.(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78-1번지 (점유면적 40.00m)	2018. 1. 1.~ 2018.12.31.	1,288,8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82번길 49-12 A동 B03호 (옥련동, 소망주택)

위 공고기간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일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변상금부과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건

<기타의견>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121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청해 엔지니어링	김영준	2019. 6. 24.	인천190010	700,00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2(만수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121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6. 24.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변경

○ 단체명 : 김미라예술단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	변경 사항			주관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7-0- 인천광역시- 1호 (2007. 1. 3.)	김미라예술단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25 (옥련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48 (선학동)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2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1) 업 체 명 : (주)창조이엔지
- 2) 대 표 자 : 박영선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22, 101동 704호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06호, 수질 제107호
- 6) 등록연월일 : 대기(2017.11.24.), 수질(2017.11.24.)
-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 7) 취 소 일 자 : 2019. 06. 2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9 - 122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서진디앤씨	2019. 6. 25.	인천 120010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14 요진코아텍 표면처리센터 기숙사동 240, 241호	기술인력 미충원	

2019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2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1) 업 체 명 : 하나산업
- 2) 대 표 자 : 박은희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11동 225호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2호
- 6) 등 록 일 자 : 2019. 6. 25.